

2015 수원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수원문화재단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고유목적 사업과 수탁사업 추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
- 재단이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수원문화재단 업무 전반
- 감사범위 : 2013. 3. 1. ~ 2015. 4.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3. 23.(월) ~ 4. 1.(수) [8일간]
- 감사인원 : 감사관 등 9명

4. 감사 중점사항

- 조직 및 인사관리·직원 보수 체계에 관한 사항
- 재정운영(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 실태 전반
- 수탁사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의 적정성
- 기획공연 등 공연관련 분야
- 공연장 대관업무 및 시설관리 분야
- 기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전회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II 감사 대상 현황

1. 연혁 및 특성

- 2012. 2. 20. (재)수원문화재단으로 출범하여 수원시 문화정책 사업과 관광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사업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 구현에 기여
-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수원SK아트리움 개관과 운영, 어린이도서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수탁 운영, 제51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연극제, 음악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 3월에는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교육관을 개관하는 등 문화도시 수원 만들기에 역할을 다하고 있음

2. 기본현황

- 조직 및 인원 : 2국 6부 1기획단 16팀, 정원 165명 / 현원 151명
-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고
출 연 금	15,008	18,354	15,586	
민간위탁금		2,186	3,888	

3. 위수탁사무 현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 수원『화성』시설, 문화공간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 수원SK아트리움 운영관리
- 어린이도서관(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운영관리
-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교육관 운영관리



감사결과

1. 감사총평

○ 감사의 특징

- 문화재단이 그간 고유목적사업과 수탁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문화재단 운영과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성 제고와 불합리한 업무처리의 개선방향을 찾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음

○ 잘된 점

수원SK아트리움 개관과 운영,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연극제와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수원천 공공프로젝트, 수원유람 스토리텔링 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 문화진흥 사업과 예술단체 지원 및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음

○ 미흡한 점

재단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제·개정 및 보수체계 재정비, 물품 전산화 등 관리가 필요하며, 점차 재단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체감사 활동 인력과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재단 내부의 감사기능 및 시설공사 설계·준공 검사 업무가 미흡하였음

○ 앞으로의 과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법령위반과 예산낭비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는 조속히 제·개정하고 자체감사 활동 및 행동강령 운영 이행이 절실히 요구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총계	주의 (건)	시 정 (건/금액)				개선	신분상 조치			비고
		소계	회수	부과	기타		계	훈계 (건/명)	주의 (건/명)	
24	13	10/ 53,150	6/ 52,539	1/ 611	3	1	6/18	2/5	4/13	

3. 주요 지적사항

□ 인사 분야

제목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채용절차 부적정 (no. 1)
처리 기준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의거 직원 공개 채용시에는 인사위원회 결정(심의)에 따라 채용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함
위반 내용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인 직원 채용방법(서류전형, 면접시험)과는 다르게 서류전형, 논술 및 면접시험으로 채용 공고하고 평가하여 인사규정의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인사규정 제8조(소집 및 의결)의 인사위원회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서면 의결하고 인사규정 제9조(간사 및 서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함에도 미준수
처분 지시	향후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비치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도록 업무 철저

제목	직원 보수체계 적용 및 연봉제 직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no. 3)
처리 기준	<p>시 예산재정과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보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적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적용하여 보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제 : 인상률 공지, 호봉제 : 전년도 공무원 봉급표 적용 · 연봉 구성항목 공지 : 기본연봉(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등), 부가연봉(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연봉
위반 내용	<p>시에서 통보한 공공기관 보수 적용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률을 과다 적용, 당해년도 공무원 봉급표 적용 ·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4.1.24. 규정을 개정하여 부가연봉으로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포함)을 신설하고 시행 전인 2014.1.20. 미리 정근수당 지급
처분 지시	<p>시 예산재정과에서 시달한 공공기관 보수적용 사항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부가연봉 항목으로, 정근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급여체계를 개선(연봉제 규정 개정)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정근수당 14,679,280원 회수</p>
제목	성과상여금 산출 부적정 (no. 3)
처리 기준	<p>재단 연봉제 규정에 성과연봉은 수원시 지침에 의하며 지급액 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기본연봉÷12)-(직급보조비월액 + 정액급식비월액)】 ÷1.1 에 따라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2013년도 및 2014년도 시 문화관광과에서 통보한 문화재단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지급액은 기본급 월액에 지급율(등급)을 곱하여 해당성과 연도 근무월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p>
위반 내용	<p>2013년도 및 2014년도 성과상여금을 문화재단 연봉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연봉월액(기본연봉액/12월)을 적용하여 35,981,220원 과다 지급</p>
처분 지시	<p>기준기본급이 아닌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다 지급된 성과상여금 33,842,670원 회수</p>

□ **재산관리 분야**

제목	변상금 미 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no. 9)
처리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 자료의 이용 등)에 의거 재산조회 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위반 내용	연무정(식당 , 매점) 두 물건에 대하여 2012.7월 변상금을 부과하고 2014.7월 체납액 납부 독려만 한차례 했을 뿐 징수독려,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변상금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
처분 지시	빠른 시일 내에 변상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등 업무 철저
제목	기업은행 ATM기 관리 부적정 (no. 11)
처리 기준	문화재단 재산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원시에서 위탁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행에서 설치한 ATM기에 대하여 사용허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위반 내용	계약절차 없이 은행 ATM기 설치를 허가하고 2013년~현재까지 사용료 산정 및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전기 사용료 부분에 대한 협의 없이 문화재단 예산으로 집행
처분 지시	은행으로부터 납부 받지 못한 사용료(611,350원)를 징수하고 전기사용료는 계량기 별도 설치 등을 통하여 은행에서 납부하도록 시정

제목7	물품관리규정 미준수 (no. 15)
처리 기준	재단 물품관리규정에 따르면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및 비소모품 출납카드를 비치 작성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또는 지정된 장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 내용	2013.3.1.이후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데스크컴퓨터 등 총 4,196개 물품에 대하여 물품수납 및 출급원장 등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규정 위반
처분 지시	데스크컴퓨터 등 4,196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2014.12.31.기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

□ 예산 회계 분야

제목	소액 수의계약 분할 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no. 5)
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위반 내용	2013~2014년 해마다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필요시 발주하고 낙찰률 93~95%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제 등 단일사업에 대하여 장비 임차 용역, 홍보물 제작 등을 1인 견적 가능 금액으로 분할 발주하고 계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반
처분 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 연간단가계약 활용 및 문화제 등 단일사업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분할 또는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제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no. 18)
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함
위반 내용	2012.12.31. 준공한 종합안내판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 및 완료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공사의 사후관리 및 시설물 적기 보수를 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처분 지시	2015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정기 하자검사 업무 철저
제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정산업무 소홀 (no. 19)
처리 기준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위반 내용	0000000 0000 전기공사 등 2건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사용하지 않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구입비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
처분 지시	부당 지급된 1,541,000원 회수
제목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부적정 (no. 22)
처리 기준	공사감독원은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기타 계약 사항대로 수행되는지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하여야 함
위반 내용	0000000 무대바닥공사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수급인이 목재폐기물을 필요한 곳에 임의 처리하여 비용 발생이 없었음에도 공사감독원은 증빙서류 확인 및 정산조치 없이 준공 처리
처분 지시	부당 지급된 616,000원은 회수

□ 기타 관리 분야

제목	운영직 직원 근태 관리 소홀 (no. 11)
처리 기준	재단 운영직 직원 관리규정에 따르면 근무상황카드 또는 전자식 근무상황관리기로 운영직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연장근무, 휴가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명령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 내용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운영직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매일 출퇴근 내역을 시스템에서 조회 및 확인하여 운영직 직원의 근태를 관리했어야 함에도 시스템 오류, 지각, 조퇴 등 출퇴근 내역이 시스템에 누락된 직원들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청원휴가 등을 별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을 연장근무 명령 없이 하고 그에 따른 수당 지급
처분 지시	문화재단 운영직 직원 관리규정에 따라 근태관리 업무 철저 및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업무 철저
제목	규정 제·개정 업무 소홀 (no. 6)
처리 기준	재단 제 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규정 등을 조속히 제 개정하여 재단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함
위반 내용	정관 제4조(사업)에 현재 재단에서 행하는 사업과 상이하고, 공인관리규정 개정 없이 공인을 신설하여 사용개시 또한 보수, 인사, 취업, 직제규정, 회계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전회 감사 시「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미이행
처분 지시	정관, 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시정

제목	자체 감사활동 및 행동강령 업무 소홀 (no. 7)
처리 기준	재단 감사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익년 정기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획에 의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내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및 휴가철, 명절 전후 등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반 내용	2012.2.20.출범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년도 6월, 12월에 복무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체감사 활동 및 행동강령 업무 소홀
처분 지시	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분장사무에 감사업무를 두고 사무를 분장하여 자체감사활동 및 행동강령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제목	홈페이지 운영 부적정 (no. 13)
처리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위반 내용	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부정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시민불편 및 재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신고 할 수 있는 “열린의견”창구에는 신고자 실명이 그대로 노출
처분 지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단 홈페이지 내 부정부조리 신고센터, 열린의견 창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4. 모범사례

『유휴자금 운용』 등 효율적 예산관리

- 수원문화재단 회계 및 예산관리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유휴자금 예치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창출
- 부가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립을 위한 가족수당 등 지급수당에 대한 일괄 점검 실시로 과지급액 환수 조치

추진개요

- 기 간 : 2014. 1. 1. ~ 2015. 3. 31
- 세부내용
 - 기본재산 운용
 - 자금집행 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유휴자금 정기예금 예치
 - 가족수당 등 부가수당 지급내역 일제점검 실시

추진성과

- 기본재산 및 유휴자금 운용액 ----- 14,124백만원
- 유휴자금 운용수익 ----- 129백만원
- 가족수당 및 정근수당 일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1월
 - 환수대상 : 18명(가족수당 11명, 정근수당 7명)
 - 가족수당 과지급액 환수 조치 ----- 2,494천원
 - 정근수당 과지급액 환수 조치 ----- 4,298천원

기대효과

- 계획적인 예산관리로 낭비 없는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익 창출
- 수당지급의 기준 확립과 과지급액 사전환수로 예산관리의 투명성 제고

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단 운영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홍보단을 모집, 재단 사업 연계 팸투어를 실시하여 SNS 활동으로 다각적인 해외홍보 네트워크 및 콘텐츠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
- 대 상 : 국내 대학교 재학 외국인 대학·대학원생
(일본, 폴란드, 몽골 등 11개국 20명)
- 사업내용
 - 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단 모집 및 운영
 - 재단 주요사업 연계 투어 및 관광모니터링 실시
 - 자국어로 SNS 활용, 재단 소식 및 행사 홍보



□ 추진성과

- 수원문화홍보단 1기 운영(2014년)
 - 일본, 중국, 독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6개국 15명으로 구성
 - 재단 주요사업 연계 투어 진행(발대식, 해단식 포함 총 6회)
 - tbs 교통방송 영어라디오(eFM <1013 Main Street>) 출연
- 수원문화홍보단 2기 운영(2015년 현재)
 -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폴란드 등 11개국 20명으로 구성
 -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국어 홍보 실시
 - 재단 주요사업 연계 투어 실시(2015년 총 4회 예정)
 - 발대식 및 1차 투어(2015년 4월) : 수원화성 관람 및 상설체험
 - 2차 투어(2015년 5월) : 수원연극축제 연계, 전통공예·무용체험

□ 기대효과

- 전 세계 수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및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정보교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